

##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(심사보고)

#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'99. 9. 11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화부일자 : '99. 9. 11(의안 제46호)
- 라. 상정일자 : 제38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(99.9.15상정)  
제39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('99.10.11제상정)

#### 2. 제안이유

- .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제가 폐지되고 입무 및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며, 기타 현행 제도의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3. 주요골자

- 가.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(종전조례 제12조)
- 나. 부설주차장 일반에의 제공 조항 삭제(종전조례 제20조)
- 다. 모범납세표창수상자 공영유료주차장 1년간 무료 혜택 제공(안 별표 1 제10호)
- 라. 건축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단순화(21개 종류 → 7개 종류) 및 업무시설,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당 1대를 15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(안 별표 제2호)
- 마. 과징금 처분조항 삭제(종전조례 제23조 및 별표 4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99년 2월 8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 개정으로
- 나.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
- 다.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자유화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며
- 라.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개정안으로
- 마. 상위법과 마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

5. 결의 및 답변요지:

. 주차장조례를 강화시켜 면지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.

.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은 없음

6. 토론요지 : '99.9.15 : 심사를 유보함

'99.10.11 : 원안 가결함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본회에 부의하기로 함)